

7/8

기 안 용 지 [공고제]

도시 번호	도시 415		(전화번호 366)	신경구청 11 조 3 향 주장
처의 기관	도시 계획 주 짐		제12우리당	신경사장
일자				
보존 연한				
보	도시계획 과장		협	법무과장 (공간질서) 시민과장
조	지역계획 계장			운영과장
기				종합계획 계장
관			조	기록계획 계장
기 안 책 임자	간 통 섭	7. 6. 26.	근무 관리자	
경 우	각 안 칠. 군	발	통	
수 신		신		
참 조				
제 목	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			
" 제 1안. 내부 결정 "				
1. 관내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 (녹지 지역 → 주거지역) 을 도시 415 ~ 417 호 (71. 12. 17.) 로 건설부 관관에게 풀시 하였던 바				
2. ① 8월 도시 415 ~ 416 호 (72. 6. 21.)로 별첨 고지문 사본 및 관계도면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시행코로 하오니 재				
정 서				
관 인				
발 총				

0201-1-8A

1969. 11. 10. 송인

5-1 1PP

190mm × 268mm 백 장지 40g/m²

설하여 주거가 바뀝니다

제2안. 공고안

서울특별시 공고 제 2호

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

서울특별시 관내 성동구 성수동 지내 경마장 부근 일
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건설부 고시 제 258호(72. 6
21)로 변경 결정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5항 규정에
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관례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
구청 시민봉사 실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례인에게 보입니다.

72. 6.

서울특별시장

가 용도지역 변경 조서

구 분	기 정	변 정	변경 후	비 고
주거 지역	392.864.972 (3)	56.136	392.921.128	
농지 지역	255.254.400 (15)	56.136	255.197.264	

별첨 도면 표지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정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
시민봉사실에 보관

제3안.

수신 성동구청장

발신 시장

제목 동 건

1. 자주 관내 성수동 1가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
고시 제 258호 (72. 8. 21)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고시
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공고문
사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자주 배치도면을 정리하고 제시판에 제
시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게 할것이며 대지증명 발급등 관계업무
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첨부 ~~증명~~ 공고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 1부 "를.

"제5안.

수신 시민과장
제목 동 건

발신 도시계획과장

1. 당시관내 성동구 성수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건설
부 고시 제 258호 (72. 6. 26)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고시
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문 사본
및 도면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도시계획 열람 사무처장에 만전을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"를.

"제5안.

수신 공보 실장

발신 도시계획과장

제목 동 건 (시보재개의회)

1. 건설부고시 제 258호 (72. 6. 26)로 관내 성동구 성수
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
도시계획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였으니 시보에

서울특별시
5-3

5-4

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문 4본 1부

11.



